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수산공익직불제 총괄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및 항만·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 조건불리지역·경영이양 직불제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7급 8명), 신규 항만 순찰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8급 2명)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위한 500톤급 어업지도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7급 3명, 8급 4명, 9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사안전국의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7. 16. ~ 7.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체계(e-Navigation)의 개발·구축 및 운영

제55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8월 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⑩ 항만·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8월 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별표 2 중 총계 “592”를 “594”로 하고, 일반직 계 “588”을 “59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71”을 “573”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887”을 “2,911”로 하고, 일반직 계 “2,776”을 “2,80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753”을 “2,777”로 한다.

별표 5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5조제9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8월 9일)

총계	3
일반직 계	3
5급 이하	3
7. 제55조제10항 관련 한시정원(준속기한: 2023년 8월 9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해사안전국) ①·② (생략)	제13조(해사안전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24. (생략)	1. ~ 24. (현행과 같음)
25. <u>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 S) 및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e-Navigation)의 설치·관리 및 기술개발</u>	25. <u>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 S)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체계(e-Navigation)의 개발·구축 및 운영</u>
26. ~ 28. (생략)	26. ~ 28. (현행과 같음)
제55조(한시정원) ① ~ ⑧ (생략)	제55조(한시정원) ① ~ ⑧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⑨ <u>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8월 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u>
<u><신 설></u>	⑩ <u>항만·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8월 9일까지 별표 5</u>

	<u>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 에 둔다.</u>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92</u>	<u>594</u>	+2
•	•	•	
•	•	•	
일반직 계	<u>588</u>	<u>590</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71</u>	<u>573</u>	+2
•	•	•	

[별표 3]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887</u>	<u>2,911</u>	+24
•	•	•	
•	•	•	
일반직 계	<u>2,776</u>	<u>2,800</u>	+24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753</u>	<u>2,777</u>	+24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51